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2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윤영덕ㆍ기동민ㆍ김승남

김승원 · 노웅래 · 민형배

박영순 · 송갑석 · 신정훈

윤건영 • 윤준병 • 이광재

이동주 · 이병휴 · 이용빈

이형석 • 인재근 • 조오섭

진성준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청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법의 공청회 규정에 기반 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음. 또한 행정청에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의 제공을 권고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공청회의 실시가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졌음. 또한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, 그 밖에 이

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,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설치 및 예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감염병 위기를 겪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행정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8조의2제1항, 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, 그 밖에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아니하고 전자공청회만 실시할 수 있다.

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·모바일 프로그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·비전자적 시스템(이하 "국민참여 플랫폼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의2(전자공청회) ① 행정청 제38조의2(전자공청회) ① ---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 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공청회(이하 "전자공청회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 <단 다만. 서 신설>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공청회 와 병행하지 아니하고 전자공청 회만 실시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52조(국민참여 확대 노력) (생 |제52조(국민참여 확대 노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략)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 <신 설> 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· 모바일 프로그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 · 비전 자적 시스템(이하 "국민참여 플랫폼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

<신 설>	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
	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도록
	노력하여야 한다.
	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국
	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
	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
	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